

군포시의회 공고 제2022 - 21호

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발령

제2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「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.

2022년 4월 11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군포시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「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」을 이에 발령한다.

2022년 4월 11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

군포시의회 훈령 제20호

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군포시의회 소속직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능률적인 인사행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군포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소속 일반 직원에게 적용하며,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·공개) 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포시의회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공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

2. 승진·전보 등 임용기준

3.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계획

4.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평등의 원칙) 인사를 운영할 때에는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능력과 실적에 따라 양성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

제2장 인사위원회

제5조(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둔다.

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법 제7조제5항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포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신이 쇠약하여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

제7조(인사위원회의 기능)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
2.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
3. 인사운영에 관한 임용권자 요청사항
4.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관장 사항

제8조(인사위원회의 회의) 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사무직원) 인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
제10조(비밀유지) 누구든지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의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장 승진

제11조(기본원칙) 상위직 결원 시 보충은 소속직원 중에서 승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의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결원의 신속한 충원을 위하여 다른 기관 소속직원을 전출입 동의 절차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.

제12조(승진방법) ① 6급 이하에의 승진은 현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한 법정배수 범위 내의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.

②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승진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자는 해당 기간에 승진임용할 수 없다.

1.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으로 “가” 평정을 받은 사람
2. 공사생활에 흠결(공익저해, 윤리성, 품위손상 등)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
3. 그 밖에 승진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제4장 근무성적평정

제13조(평정대상 및 시기) ① 근무성적 평정대상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4조(근무성적평정) 근무성적평정은 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 제5조부터 제11조의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.

제15조(평정자 및 확인자) ① 근무성적 평정대상별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와 같다.

② 평정자와 확인자는 소속직원의 동일 직급 평정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점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장 전보 및 보직관리

제16조(전보원칙) 소속직원의 전보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6조에 따른다.

제17조(순환보직) 소속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 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.

제18조(보직제한) 6급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 비위
2. 음주운전 관련 비위
3.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
4. 친절·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
제19조(결원보충) ① 6급 이하 소속직원의 결원은 의회 자체 충원과 다른 기관에서의 전입으로 충원한다.

② 타 기관 공무원의 전입은 7급 이하로 하되, 본인의 동의하에 강입하여 전입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할 수 없다.

1.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2.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람
3.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
4. 법령에 따라 전보가 제한된 사람

제6장 보칙

제20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) 이 규정 시행 전 구성 및 개최한 인사위원회 등은 이 규정에 따라 구성 및 개최한 것으로 본다.

■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[별표]

근무성적 평정 및 확인자(제15조제1항 관련)

평정단위	5급 평정		6급이하 평정		비 고
	평 정 자	확 인 자	평 정 자	확 인 자	
의회	부의장	의장	의회사무과장	부의장	